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53호
2021. 7. 2.(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조 례(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조례 제1533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534호)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535호) 12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72호) 22

공 고(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39호) 2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40호) 2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1-741호) 31
-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742호) · 33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755호) 35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3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용돈 수당(이하 ”용돈 수당“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의 소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용돈 수당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돈 수당을 지급받는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돈 수당을 지급한다.

② 용돈 수당의 지급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용돈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린이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3. 그 밖에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용돈 수당 지급 대상자는 해당 연령에 이르는 연도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급 결정) 구청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용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급 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용돈 수당 지급을 결정한 대상자에게 용돈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용돈 수당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덕e로움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돈 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용돈 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지역) ① 용돈 수당의 사용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로 한다.

② 용돈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용돈 수당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용돈 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용돈 수당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취득한 용돈 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용돈 수당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카드명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용돈 수당 카드(대덕e로움)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카드번호			

본인(대리인 신청)은 신청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용돈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신청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카드인 '대덕e로움' 발행·운영 대행업체	어린이 용돈 수당 전용 카드 제작	카드번호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급 대상자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용돈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용돈 수당 지급 신청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 대덕e로움 카드는 무기명 카드입니다.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대상자가 용돈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라. 사용지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재원조성)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남은 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2. 경영·기술·정보 지원
3.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

4.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운영
5.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상담
9.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위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7조(보조 및 출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출연할 수 있다.

제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대덕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 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산업 현장으로의 파급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경제지원을 전담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제1조).
- 나. 재단의 형태를 정함(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다. 재단의 사무소, 재산 등을 포함한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라. 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마.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바. 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 및 출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사. 회계연도 및 보고·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산업진흥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덕구 지역 산업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6.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기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산업진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심의·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계, 학계, 법조계, 현장전문가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진흥 지원

제16조(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사업과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및 고용촉진 등 지역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관하여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1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

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제21조(우수기업 포상)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2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6장 기업유치 지원

제23조(기업유치 지원의무)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에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처리의 특례) 기업유치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다.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바.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및 제22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472-7, -10, -28	대전로1032번길 13-23	2021. 7. 2.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오정동	200	아스콘	6,539.0	2021.06. ~2021.12.	10,462.40 (2021.06. ~ 2021.12.)	1,307.80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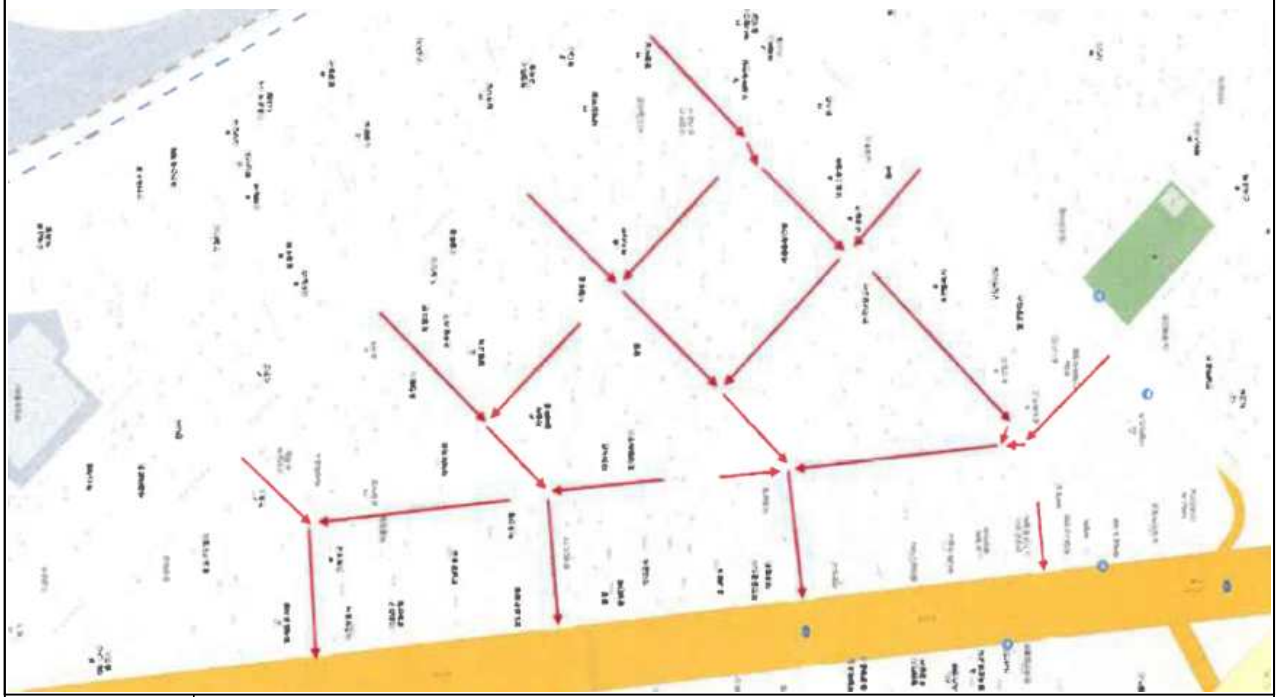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14번길 외 16개소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14번길 외 16개소
<p>사 진</p>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14번길 외 24개소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14번길 외 24개소
<p>사 진</p>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88번길 외 30개소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88번길 외 30개소
<p>사 진</p>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20번길 외 32개소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20번길 외 32개소
------	----------------------------

<p>사 진</p>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덕암로 249 번길	하수관로 정비	덕암동 22-5 번지	300	아스콘	88.0	2021.07. ~2 021.11.	220.00 (2021.07. ~ 2021.11.)	29.70
2	대덕구 계족로 521 번길	하수관로 정비	중리동 253-1 번지	450	아스콘	52.0	2021.07. ~2 021.11.	130.00 (2021.07. ~ 2021.11.)	26.40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5번지 일원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5번지 일원
<p>사 진</p>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53-1번지 일원
<p>위 치 도</p>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53-1번지 일원
<p>사 진</p>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기전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굴착구간	굴착목적	굴착위치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한밭대로	전기관로 매설	중리동 469 번지	28	아스콘	167.0	2021.06. ~2 021.08.	167.00 (2021.06. ~ 2021.08.)	1.78
				100	투수블록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69번지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69번지 일원
사 진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해가연푸드	김○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58 3번길 45, 1,2층(상서동)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현재 타 업종이 영업중에 있음)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21. 7. 2.(금) ~ 7. 15.(목) (14일간)
6. 청문일시 : 2021. 7. 16.(금) 10:00~18:00
7. 고지사항

가. 상기 공고기간까지 대덕구청 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장동2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해당 필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현장 입회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에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년 7월 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대상: 21명(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21. 7. 2. ~ 2021. 7. 16.(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덕구 토지정보과(☎042-608-5313, 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 시 송 달 조 서

지구명 : 장동2지구

연 번	토지 소재		지목	면적 (㎡)	소유자정보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	장동	694	답	30	전○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 231번길 ***	수취인불명 (사망자)
					전○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수 사운로 ***	수취인불명 (사망자)
					전○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수취인불명 (사망자)
2	장동	696	전	139	전○국	대덕군 신탄진읍 장동리 **	주소불명
3	장동	703	묘지	565	이○산	대덕군 동면 신촌리 ***	주소불명
4	장동	731	하천	9	최○련	대덕군 신탄진읍 장동리 **	주소불명
5	장동	773	답	1,722	여흥민씨 동지○○ 파종중	대덕구 탄동면 장동리 ***	주소불명
6	장동	725-1	전	1,346	김○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 105동 401호	폐문부재
7	장동	718	전	2,033	남○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7 7번길 **	폐문부재
8	장동	720	전	973	이○복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로 **	폐문부재
9	장동	778	대	750	전○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 61번길 **, 108동 1207호	폐문부재
10	장동	708	답	2,056	경주최씨 한영○○ 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 로 ***, 107동 101호	폐문부재
11	장동	711-2	답	1,322	옥천전씨 산대동정 공파문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2 31번길 ***	수취인불명
12	장동	729	답	720	경주최씨 영노○○ 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들4길 **, 3층동	폐문부재

연번	토지 소재		지목	면적 (㎡)	소유자정보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3	장동	707	전	707	이○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 로114번길 **, 307동 206 호	폐문부재
14	장동	710-2	답	1,012	박○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 68번길 **, B동 201호	폐문부재
15	장동	780	답	1,215	염○배	대전광역시 동구 솔랑시울 길 ***	폐문부재
16	장동	695	전	2,037	이○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 *, 305동 1008호	폐문부재
17	장동	790-3	대	314	임○열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96 번길 **~**	폐문부재
18	장동	712-2	답	895	장○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로 ***, 113동 509호	폐문부재
19	장동	725-2	전	1,276	최○영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 *, 701동 2301호	폐문부재